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운수종사자 고용상 남녀차별 금지의무 명문화 및
운수종사자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072호)

2026. 4.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오 세 일

목 차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제2216072호)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2
1. 운수종사자 고용상 남녀차별 금지의무 명문화(안 제21조제13항 신설) ..	2
2. 운수종사자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안 제21조의2 신설 및 부칙 제2조) ...	9
※ 참고자료	12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221607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도읍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1. 15.
3. 회 부 일 : 2026. 1.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부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모집 및 채용 등의 과정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채용을 기피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유 없이 성별을 차별하지 않도록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운송시설 등에 화장실 및 휴게실, 탈의실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운수종사자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21조제13항, 제21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운수종사자 고용상 남녀차별 금지의무 명문화(안 제21조제13항 신설)

가. 검토의견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¹⁾(이하 “운송사업자”)가 모집·채용, 임금 및 배치 등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운수종사자²⁾ 또는 운수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명문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3항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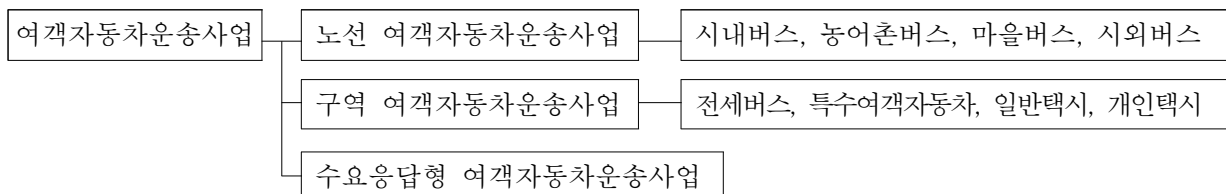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 운송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춘 자만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 ⑤ 삭제 <2020. 4. 7.> ⑥ 운송사업자는 제27조의2에 따라 여객이 착용하는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 ⑫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여객이 6세 미만의 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수 있는 상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⑦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방법, 내용, 시기 및 주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⑧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석 및 그 옆 좌석에 에어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⑨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거나 이용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차량 및 운전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 여부 2. 제84조에 따른 차령 및 운행거리 기준 준수 여부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 여부 4. 그 밖에 이용자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⑩ 삭제 <2025. 12. 2.> ⑪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안전운전에 필요한 충분한 휴식시간(이하 “휴식시간”이라 한다)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수단별 휴식시간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현행	개정안
⑫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를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확인한 결과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운수종사자가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외에 안전한 운행과 여객의 편의 또는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지도·확인에 대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⑬ <u>운송사업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배치 등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운수종사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⑭ (현행 제13항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버스, 택시 등의 업종이 이에 해당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업종 분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

버스, 택시, 화물 등 운수업 분야는 전통적으로 남성 중심의 고용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음.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확대되고 고용분야에서 성평등에 관한 인식 및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 왔으며, 특히 여성의 자동차 운전이 보편화 되었음에도, 버스, 택시 등 여객 운송업계의 경우 2025년말 기준 전체 운수종사자 중 여성 비율이 1.7%(버스 2.1%, 택시 1.5%)에 불과하여 고용상의 남녀 불균형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참고. 참조)

【 버스·택시 운수종사자 현황 】

구 분		2023년말		2024년말		2025년말	
		남	여	남	여	남	여
계	인원(명)	366,219	6,235	375,741	6,586	382,082	6,732
	구성비	98.3%	1.7%	98.3%	1.7%	98.3%	1.7%
버스	인원(명)	133,810	2,668	139,951	2,928	144,779	3,069
	구성비	98.0%	2.0%	98.0%	2.0%	97.9%	2.1%
택시	인원(명)	232,409	3,567	235,790	3,658	237,303	3,663
	구성비	98.5%	1.5%	98.5%	1.5%	98.5%	1.5%

자료 : 한국교통안전공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제1항3)에서는 근로자 모집·채용 시 남녀차별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최근 한 언론에서는 장기 무사고 운전경력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략)

가진 여성이 다수의 버스업체 채용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탈락한 사례가 보도되기도 하였음⁴⁾.

이에 개정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운송사업자가 모집·채용, 임금 및 배치 등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운수종사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하려는 것으로, 여객 운송업계에서 남녀의 고용상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함.

다만, 개정규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는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여객의 안전운송 및 편의증진과 여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문으로서, 고용관계에서 사용자로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준수하여야 할 남녀차별 금지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이미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사업자의 남녀 고용차별 금지의무 관련 현행법 규정 】

법률명	조 문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여성 버스기사 안 뽑아요”...유인책 무용지물, 2025. 5.29. KBS뉴스 부산(네이버 뉴스 검색,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67280&ref=A>)

법률명	조 문
	제8조(임금)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제9조(임금 외의 금품 등)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용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교육·배치 및 승진)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4조(경제활동 참여) ① (생략) ②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여성이 승진·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여성이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⑥ (생략)

나. 국토교통부 의견

운수종사자 모집 및 채용 등에서 성별 차별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감함.

다만, 현행법령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에는 성별에 따른 채용제한 규정은 없으며, 사업용 자동차(버스, 택시)의 여성 운수종사자는 지속 증가하고 있음.

또한, 성별에 따른 근로자 채용 및 처우 개선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규정을 운송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운수종사자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안 제21조의2 신설 및 부칙 제2조)

가. 검토의견

개정안은 운수종사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운송시설 등에 화장실·휴게실·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운송사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이를 준수하여야 할 운송사업자의 범위와 시설의 설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기존의 운송사업자는 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법령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음(안 제21조의2 신설 및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신설>	<u>제21조의2(편의시설의 설치·운영)</u>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운송시설 등에 화장실·휴게실·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에 관한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는 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제21조의2의 개정

현행	개정안
	규정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버스, 택시 등 여객 운송업계는 2025년말 기준 여성 운수종사자 비율이 1.7%로 매우 낮아 남성 중심 구조가 강한 업종임. 이러한 경우 채용, 임금, 배치 등 고용뿐 아니라 사내 제도나 관행, 근로환경 전반에 걸쳐 성차별 문제가 나타남.

화장실, 휴게공간 등 여성 친화 시설 부족, 남성 중심의 조직문화, 남성 구성원이나 승객들로부터 성희롱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환경 등이 대표적인 문제이며, 이는 여성의 이탈률을 높이고, 구인·구직에서 모두 여성의 진입을 기피하게 만들어 남녀 간의 고용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됨.

이에 개정안에 따라 운수종사자를 위한 화장실·휴게실·탈의실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송사업자에게 시행 이후 2년 내에 이를 준수하도록 할 경우 근로환경 개선을 통하여 여객 운송업계에 여성 고용이 촉진되고 남녀 고용 불평등 문제가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편의시설 확충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해 운송사업자에게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개정안에서는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이를 준

수하지 않는 경우 제재수단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실효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여객 운송업체의 수익성 낮은 경영여건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전면적으로 의무화를 하거나 시행 초기부터 제재수단을 도입·적용하기보다는 면밀한 실태조사를 거쳐 단계적인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근로환경 개선 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나. 국토교통부 의견

운송시설 등에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운수종사자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개정안 취지에는 동감함.

다만, 국토교통부는 노선버스 공영차고지 지원사업⁵⁾을 통하여 운수종사자 근로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편의시설(휴게실, 숙박실, 샤워실, 식당 등)을 제공해 나가고 있고, 운송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584

5)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등을 지원하여 노선버스 차고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종사자의 근로여건을 향상시켜 노선버스의 안정적인 운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20년부터 추진 중임.

참고

버스·택시 운수종사자 성별 고용현황(2025년말)

구 분		버스		택시		계	
		남	여	남	여	남	여
계	인원(명)	144,779	3,069	237,303	3,663	382,082	6,732
	구성비	97.9%	2.1%	98.5%	1.5%	98.3%	1.7%
서울	인원(명)	24,516	453	69,819	678	94,335	1,131
	구성비	98.2%	1.8%	99.0%	1.0%	98.8%	1.2%
부산	인원(명)	9,474	54	19,524	276	28,998	330
	구성비	99.4%	0.6%	98.6%	1.4%	98.9%	1.1%
대구	인원(명)	5,617	45	13,629	203	19,246	248
	구성비	99.2%	0.8%	98.5%	1.5%	98.7%	1.3%
인천	인원(명)	8,035	176	14,040	257	22,075	433
	구성비	97.9%	2.1%	98.2%	1.8%	98.1%	1.9%
광주	인원(명)	3,446	33	7,312	148	10,758	181
	구성비	99.1%	0.9%	98.0%	2.0%	98.3%	1.7%
대전	인원(명)	3,385	21	8,063	114	11,448	135
	구성비	99.4%	0.6%	98.6%	1.4%	98.8%	1.2%
울산	인원(명)	3,114	95	5,405	260	8,519	355
	구성비	97.0%	3.0%	95.4%	4.6%	96.0%	4.0%
세종	인원(명)	1,085	27	511	13	1,596	40
	구성비	97.6%	2.4%	97.5%	2.5%	97.6%	2.4%
경기	인원(명)	10,611	359	9,201	172	19,812	531
	구성비	96.7%	3.3%	98.2%	1.8%	97.4%	2.6%
강원	인원(명)	34,403	1,109	29,903	510	64,306	1,619
	구성비	96.9%	3.1%	98.3%	1.7%	97.5%	2.5%
충북	인원(명)	3,218	41	7,176	102	10,394	143
	구성비	98.7%	1.3%	98.6%	1.4%	98.6%	1.4%
충남	인원(명)	4,334	112	6,169	77	10,503	189
	구성비	97.5%	2.5%	98.8%	1.2%	98.2%	1.8%
전북	인원(명)	5,925	88	6,505	83	12,430	171
	구성비	98.5%	1.5%	98.7%	1.3%	98.6%	1.4%
전남	인원(명)	4,654	55	7,765	112	12,419	167
	구성비	98.8%	1.2%	98.6%	1.4%	98.7%	1.3%
경북	인원(명)	5,440	115	6,200	176	11,640	291
	구성비	97.9%	2.1%	97.2%	2.8%	97.6%	2.4%
경남	인원(명)	3,353	71	5,170	104	8,523	175
	구성비	97.9%	2.1%	98.0%	2.0%	98.0%	2.0%

자료 : 한국교통안전공단